제26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
행정·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19. 2. 21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·재무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2019년 2월 21일
전문위원 정 우 숙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2019 - 4

나. 제 출 자 : 황동현 의원 외 12명

다. 제출일자 : 2019년 2월 1일

라. 회부일자 : 2019년 2월 13일

2. 제안이유

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」에 따라 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·지원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용어의 정의 (안 제2조)

나. 바르게살기운동조직 및 사업지원 (안 제3조, 제4조)

다.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(안 제5조)

라.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유공자 포상 (안 제6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　　타

⑴ 입법예고(2019. 2. 1. ~ 2. 8.) 결과: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취지

본 조례안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바르게살기운동 강서구협의회와 각동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건강한 시민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함

나. 주요 내용

1)〔안 제2조〕 용어의 정의

○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르게살기운동 강서구협의회와 각동 위원회를 말하며,

○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

2)〔안 제3조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

○ 주요 지원사업의 범위는

-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·발전을 위한 사업
-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
- 바르게살기 회원의 교육 및 국내 연수 경비

-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
-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의 활성화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임

3)〔안 제4조〕 사업비 신청 및 정산관련 절차에 관해 규정

4)〔안 제5조〕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와 관련한 규정으로

○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근거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대여하거나 사용·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5)〔안 제6조〕 포상관련 규정

○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

다. 종합 의견

○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진실·질서·화합의 이념으로 민주적이고 문화적인 국민의식을 함양하고, 공동운명체로서의 국민화합을 이루며, 선진국형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9년 4월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를 창립하였으며,

○ 1991년 12월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」을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.

○ 바르게살기운동 강서구협의회도 위 법령에 근거하여 매년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며, 태극기달기 캠페인, 불우이웃 돕기행사, 경로위안잔치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음.

○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여 육성·지원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및 그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바르게 살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의 추진을 보다 권장·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참고 **관계 법령**

❑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(先導)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·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국가·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바르게살기운동조직"이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.

제3조(출연금의 지급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(出捐金)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개인, 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와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조(국유시설·공유시설의 사용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·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제5조(자료의 제공 요청)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, 교육기관 또는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바르게살기운동과 관련된 연구논문 및 간행물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연구지 등의 발간)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르게살기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연구지, 홍보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.

제7조(보조사업계획서 제출)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다음 연도의 보조사업 예산을 요구하려면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보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제8조(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)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그 증명자료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제9조 삭제 <2011. 5. 30.>

부 칙 <법률 제4465호, 1991. 12. 31.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